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56호

2018. 3. 22. (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81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5

제6811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6

제681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7

제6813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7

제6814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8

제6815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3

제6816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

제681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21

제6818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22

제6819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4

제6820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25

제6821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6

제6822호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6823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8

제6824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9

제6825호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30

제6826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래 조례32

제682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5

제682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36

제6829호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6830호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8

제6831호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0

제6832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40

제683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41

제683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43

제683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44

제683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5

제6837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46

제6838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6839호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47

제6840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49

제684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51

제6842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2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2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를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개정규정은 2018. 6. 27.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7. 12. 26.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 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상생협약은 개별당사자의 임의적 사항으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상생협약 체결의 구체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16조제2항)
-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은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으로 정함(제2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주거지보전사업” 이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골목길 및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의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시기, 매매가격 및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착공신고를 한 때에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 2. 매매가격은 영 제68조제2항(대통령령 제28628호)에 따라 정하되, 건축비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확정한다.